

서 울 고 등 검 찰 청

(02-530-3586)

2006. 1. 16.

수 신 이 상 민 귀하

발 신 서 울 고 등 검 찰 청

제 목 항고사건 처분 통지

검 사 이 만 희 (인)

박 용 오 외 17 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
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처	①사 건 번 호	2006 불항 제 0290호
	②연 월 일	2006. 1. 16.
분	③결 과	결정주문 : 항고기각
이 유	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이유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,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본 항고사건은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○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<u>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</u>에 재항고(검찰청법 제10조 제2항)를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	